

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5. 1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5월 9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7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5. 16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최 용 순)

가. 제안이유

-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중 구조속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,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

(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